가정통신문

모현-4

바르고 슬기로우며 꿈을 가꾸는 행복한 어린이

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관리

- 코로나19 주요 임상 증상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**출석인정 처리**됩니다.
  - 주요 임상증상 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 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(그 외 증상은 병결 처리)
  - 단,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제외

※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**시설이용 제한 조치**로 **일과 중 등교중지** 되는 경우, **해당일은 '출석인정 조퇴'** 처리

학생	→	담임	→	학교장
(방역당국에서 발송한) 문자통보 내용(캡처, 종이인쇄) (가정에서 작성한)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⇒ **별도 서류발급 불필요**	→	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⇒ **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**	→	승인

※아래 표의 출결 증빙자료는 방역당국에서 서류 간소화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을 캡처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가능

[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]

구분	통보 주체	유형	학생 접종여부	등교중지	출결 증빙자료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
학생 본인	방역 당국	PCR 검사자	무관	결과 수령 시까지	• PCR 음성확인서
		확진자		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	• 입원·격리 통지서(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)
		PCR음성인 밀접접촉자	미완료자	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	• 격리 통지서(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)
			접종완료자	수동감시(7일)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,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	
	단위 학교	접촉자 (고위험 기저질환)	무관	결과 수령 시까지	• PCR 음성확인서
		접촉자 (그 외)		결과 수령 시까지	• [의료기관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(소견서) • [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
				※ 7일간 3회 이상(2일 간격) 실시,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	
	-	의심증상자	무관	증상 호전 시까지	• [의료기관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(소견서) • [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※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,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
실거주 동거인	방역 당국	PCR 검사자	무관	결과 수령 시까지	•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
		확진자	미완료자	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	• 동거인의 입원·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
			접종완료자	수동감시(7일)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,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	
		PCR음성인 밀접접촉자	무관	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	

※ 등교중지 기준은 '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'에 근거하며,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
※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,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
※ **밀접접촉자:**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, **접촉자:**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
※ **접종완료자**: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~90일인자(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)
※ 22.2.9.일부터 입원·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,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(24시)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 (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1361, 22.2.17.)

≪ 참고 ≫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

① **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(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)**

가.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/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

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,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

나.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

: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,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. 단, 증상이 있을 경우 '의심증상자'의 등교기준에 따름

② **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**

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,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

③ **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,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**

: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,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(단순 재검출)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.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,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

○ **(고위험군학생)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**를 통해 인정된 ①**기저질환**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**출석인정결석 처리**

≪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≫

① 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
② 보건복지부의 '장애복지카드' 소지자에 한하며,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
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※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'관심, 주의' 단계이며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 또는 문자 등)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
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(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)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및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
※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

○ **(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)**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*을 수강한 경우, **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**

*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, 해당 학생의 '등교일'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

○ **(코로나19 백신 접종) 접종일 및 이상반응** 발생 시 **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**(증빙서류: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), **3일 이상 지속** 시 **질병결석**(증빙서류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) **처리**

* 접종 후 1~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. 예)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,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

※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,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(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)

≪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≫

	접종일	접종 후 1일	접종 후 2일	접종 후 3일~
출결	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(결석·지각·조퇴·결과)			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
증빙 자료	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			의사 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

- **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**되며, **원격수업**(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)은 학생이 희망하여 **기간 내 수강**하는 경우 **출석** 처리 가능

2022. 03. 02.

이 리 모 현 초 등 학 교 장